
'24년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2025. 3. 11.

관 세 청
원산지검증과

CONTENTS

I.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1
가. 전체 검증요청 현황	1
나. 협정·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2
다. 검증요청 사유	2
II.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3
가. 한-튀르키예 FTA	3
나. 한-EU FTA	4
다. 한-인도 CEPA	6
라. 한-아세안 FTA	7
마. 한-중국 FTA	8
바. 기타 FTA (한-영국, 한-베트남, RCEP 등)	9
사. 비특혜 원산지검증	10
III. 미국 CBP의 검증동향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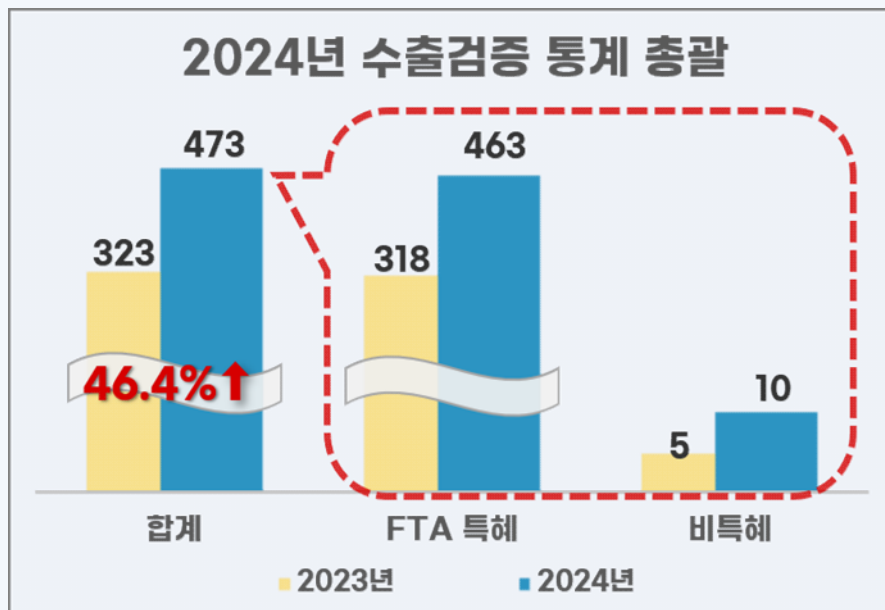
['24년도 전체)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최신 동향

- ✓ 본 자료의 「I.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II.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내용은 수입국 관세당국이 우리나라에 원산지검증을 요청한 건에 한정된 정보임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수출물품 원산지검증 통계

가 전체 검증요청 현황

(단위 : 업체수)



- **[FTA 검증]** 2024년도 우리나라에서 FTA를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해 협정상대국의 원산지검증 요청건수는 전년 대비 약 46.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튀르키예로부터의 검증 요청이 24년 6월 이후 급격히 증가함에 따른 결과입니다.
- **[비특혜 검증]** 2024년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비특혜 검증요청 건수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하였습니다.

나 협정·유형별 검증요청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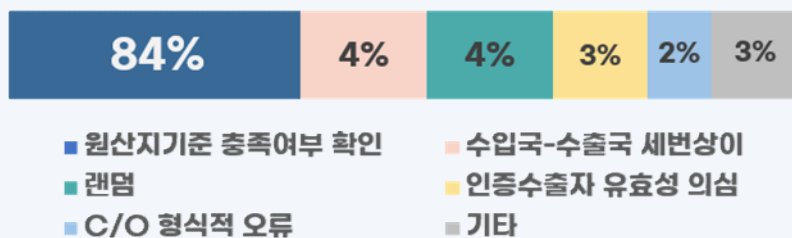
(단위 : 업체수)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년 대비
FTA 특혜 등	튀르키예	543	492	229	198	338	70.7%
	EU	135	50	71	68	71	4.4%
	인도	19	147	30	18	14	▲ 22.2%
	아세안	56	14	23	16	13	▲ 18.8%
	기타	12	11	10	18	27	50.0%
비특혜		18	16	6	5	10	100.0%
합 계		783	730	369	323	473	46.4%

- **[FTA 검증]** 2024년도 FTA 특혜 원산지검증은 한-튀르키예 / 한-EU / 한-인도 / 한-아세안 FTA와 관련하여 상대국의 검증요청이 집중되었습니다.
- **[비특혜 검증]** 2024년도 비특혜 검증은 튀르키예·EU 국가의 검증요청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다 검증요청 사유

24년도 주요 검증요청 사유



- **[요청사유]** 2024년도에는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이유로 상대국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 각 FTA 특성에 따라 협정별로 원산지검증 요청 사유에 차이가 있으므로, 검증 대응 시 「표.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II. 주요 협정별 검증동향

가 한-튀르키예 FTA



- **[현황]** 2024년도 기준, 발효된 협정 중 한-튀르키예 FTA에 따른 수출검증 요청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체 요청건수 중 약 73% 차지)
- **[품목]** 섬유류(직물·편물제) > 기계류(차량 부분품 등) > 전기기기(가전제품 등)
- **[요청사유]** 튀르키예 당국은 ① 원산지신고서의 진위여부 확인 및 ②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주요 사례]**

□ 원산지결정기준을 불충족하는 물품에 대해 원산지신고서 발행

- 한-튀르키예 FTA 규정상 편물 제품은 '역내산 실'을 이용해 역내에서 생산되어야만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수출업체 A社は 역외산 편물을 수입해 날염가공만 거쳐 최종적으로 생산한 편물 제품을 튀르키예로 수출하며 원산지신고서를 한국산으로 발행
- 수출업체 B社は '상업서류 내 FTA 원산지신고문안 기재행위'의 의미를 명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출물품의 원산지가 한국산이 아님에도 단순히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FTA 원산지신고문안을 인보이스에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행

○ [튀르키예 수출 시 유의사항]

- ✓ 22년 이후로 감소 추세였던 튀르키예 당국의 한국산 섬유류 제품에 대한 원산지검증 요청이 다시금 급증하고 있으므로, 튀르키예로 섬유류 제품 등을 수출하는 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나 한-EU FTA



- **[현황]** 2024년도에는 EU 국가 중 독일 · 네덜란드 · 이탈리아 · 덴마크 등으로부터의 요청 건수가 많았으며, 27개 회원국 중 19개 국가로부터 원산지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품목]** 섬유류(의류 등) > 화학공업제품(수지 등) > 플라스틱류(PET필름 등)
- **[요청사유]** EU 각국의 관세당국은 ①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여부와 ② 한국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 요청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 **[주요 사례]**

□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산지신고서 발행

→ 국내 수출업체 C社は 품목별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6천유로를 초과하는 제품을 EU로 수출하며 만료된 인증번호를 기재하여 원산지신고서를 부적정하게 발행

□ 한국산과 역외산 물품을 혼재하여 수출함에도 C/O를 일괄 발행

→ 국내 수출업체 D社は 자사에서 생산한 한국산 제품과 역외산 물품을 혼재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한국산 제품과 역외산 물품의 구분없이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 'KR'로 원산지신고서를 일괄적으로 발행 (역외산 물품에 대해서는 'Non-preferential' 등의 별도표시 필요)

- **[EU 수출 시 유의사항]**

- ✓ EU 국가는 우리 수출기업의 '인증수출자 지위 유효여부'를 중점 검토하고 있으므로, 원산지신고서 발행 전 자사의 인증수출자 지위 보유여부 및 갱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EU〕인증수출자 관련 주요 위반사례

① 미인증수출자임에도 원산지신고서 발급

: 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물품가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물품을 EU 국가로 수출하며 원산지신고서를 임의로 발급

- ✓ EU로 물품가액 6천유로 초과 물품을 수출하며 C/O를 발급하는 경우, 우리 회사가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사전에 반드시 확인!

②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원산지신고서 발급

: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유효기간(5년)이 만료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원산지신고서를 임의로 발급

- ✓ 인증수출자 유효기간은 통상 5년으로, 5년마다 인증 갱신 필요!

③ 수출자는 미인증수출자, 생산자는 인증수출자인 경우

: 본사인 수출자 명의로 원산지신고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생산자(지사)의 인증번호를 원산지신고문안에 기재

- ✓ 수출자와 생산자 간에 인증번호를 공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주의! 위와 같은 경우, 인증수출자인 생산자가 C/O를 발급하는 것이 적정
- ✓ 인증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부여되므로, 본지사 관계라 하더라도 별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각각 인증을 받아야 함을 유의!

④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C/O 발급

: 품목별 인증수출자이나, 인증받지 않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신고서를 발행

- ✓ 품목별 인증수출자는 HS 6단위 세번을 기준으로 인증이 부여되므로, 수출하는 모든 품목에 대하여 인증수출자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원산지신고서 발행 이전에 반드시 확인!

다 한-인도 CEPA



- **[현황]** 인도 당국의 검증요청 건수는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2024년도에도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 **[품목]** 화학공업제품(화학원료) > 전자제품 부품(휴대폰 부품) > 가전제품
- **[요청사유]** 인도 관세당국은 국내 수출물품의 ①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②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B/L, 인보이스 등)간의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주요 사례]

□ 수출물품의 HS품목분류 오류로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잘못 판단

→ 실제로는 원재료와 수출물품 간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수출업체 E社は 수출물품의 HS 세번을 오분류하여 자사 제조공정을 통해 원재료와 수출물품 간 세번변경이 이루어졌으므로 이는 협정상 원산지상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잘못 판단한 채 원산지증명서를 'KR'로 부적정하게 발급받음

○ [인도 수출 시 유의사항]

- ✓ 인도 당국은 '조합기준' 중 '부가가치기준' 충족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인도 수출 시 부가가치 계산 관련 원산지증빙서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FTA 원산지규정의 적절한 이행을 위해 회사 내 ERP 시스템, 원산지판정 로직 시스템 등의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한-아세안 FTA

- **[현황]** 2024년 아세안 관세당국의 검증요청은 태국·베트남 관세당국으로부터의 요청이 대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 **[품목]** 기호식품(기타 주류) > 기계류(사출성형기기 등) > 종이제품
- **[요청사유]** 아세안 회원국은 ① 원산지증명서의 내용 기재 오류 또는 ②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간 내용 불일치 등을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주요 사례]**

□ 원산지증명서 발급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채 C/O를 발급받음

→ 다수의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물품 간에 HS 세번이 서로 동일하여도 원산지증명서에 물품별로 품명·규격 등을 각각 상세히 기재해야하나, 수출업체 F社는 HS 세번별로 대표 품목에 대해서만 상세 규격명 등을 기재한 채로 C/O를 잘못 발급받음 ⇒ 검증 과정에서 정정발급 받음

□ 원산지증명서상 물품의 HS 세번과 아세안 국가에서 수입통관할 때 신고한 HS 세번이 서로 상이함

→ 상대국에서 수입국 HS 세번을 기준으로 한-아세안 FTA 원산지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검토를 요청한 바, 검증을 통해 수입국 HS 세번 기준으로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함을 상대국에 증빙

○ [아세안 수출 시 유의사항]

- ✓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의 절차적 요건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요령을 사전에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 한-중국 FTA



- **[현황]** 2024년도 중국 관세당국의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검증 요청건수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이었습니다.
- **[품목]** 화학공업제품(화학조제품 등) > 플라스틱류(PET필름 등) > 기계류
- **[요청사유]** 중국 당국은 ① 협정상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②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 간 내용 불일치를 이유로 검증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 **[주요 사례]**

□ 원산지증명서와 상업서류(선하증권) 간에 내용 불일치 발생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이후, 선박 스케줄에 변동이 발생하여 원산지증명서상 선박명과 선하증권(B/L)상 선박명 간 불일치 발생하자 중국 관세당국에서 검증을 요청 ⇒ 검증 과정에서 정정발급 받음

○ **[중국 수출 시 유의사항]**

- ✓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한-중 FTA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중국 관세당국의 검증 요청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니 수출 시 원산지 관리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 ✓ 더불어 원산지증명서와 선하증권 상 내용 불일치, 오탈자 등을 이유로 중국 당국에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니 C/O 발급 시 기재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 기타 FTA (한-영국, 한-베트남, RCEP 등)

- **[현황]** 상위 5개 협정 외에는 한-영국 FTA / 한-베트남 FTA / RCEP 협정과 관련하여 수출검증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품목]** 화학공업제품(화학조제품 등) · 플라스틱류 · 조제식료품 등
- **[요청사유]** 한-영국 FTA / 한-베트남 FTA / RCEP의 경우, 주로 우리나라 물품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주요 사례]**

- 한국산과 원산지 미상의 물품을 혼재 수출하며 C/O를 일괄 발행
 - 국내 수출업체 G社は 자사에서 생산한 한국산 제품과 원산지 미상의 물품을 혼재하여 수출하는 과정에서, 모든 제품에 대해 원산지 'KR'로 원산지신고서를 일괄적으로 잘못 발행
(원산지 미상 물품에 대해 'Non-preferential' 별도 표시하여 수정통보)
 - 수출물품의 HS 품목분류 세번을 잘못 기재한 채 원산지증명서 발급
 - 국내 수출업체 H社は 자사 수출물품의 HS 세번을 부적정하게 판단해 잘못된 HS 세번으로 C/O를 발급받음 ⇒ 검증 과정에서 정정발급 받음

- **[수출 시 유의사항]**
 - ✓ 한-영국 FTA / 한-베트남 FTA / RCEP과 관련해 검증요청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므로, 해당 협정 활용을 활용하여 수출하는 기업은 FTA 원산지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 비특혜 원산지검증

- **[현황]** 2024년도,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비특혜 원산지 검증요청은 튀르키예 · EU 국가로부터 주로 접수되었습니다.
- **[품목]** 섬유류(직물 · 편물제 등) · 플라스틱류 · 기계류 등
- **[요청사유]** 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와 ② 한국산 여부 확인을 위해 비특혜 원산지검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수출 시 유의사항]**
 - ✓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으로 정하는 수출물품 원산지기준 보다 수입국의 원산지기준이 더욱 엄격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에 수입국의 비특혜 원산지기준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FTA 특혜 원산지 VS 비특혜 원산지 비교 >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서식 (단위)

Original(Duplicate/Triplicate)	
Reference No.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1. Goods Consigned from(Exporter's business name, address, country)	(Combined Declaration and Certificate) FORM A(K)
2. Goods Consigned to(Consignee's name, address, country)	4. For Official Use ☐ Preferential Treatment Given Under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 Preferential Treatment Not Given (Please state reason)
3. Means of transport and route(as far as known) Departure date: Vessel's name/Aircraft etc.: Port of Discharge	Signature of Authorized Signatory of the Importing Country
5. Item number	6. Marks and numbers on packages
7. Number and type of packages, description of goods including quantity when appropriate and HS number of the importing country	8. Origin Criteria (See Notes on back)
	9.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P.U. unit when RVC criterion is used)
	10. Number and date of invoices
11.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designated to (Importing Country)	
12.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CERTIFICATE OF ORIGIN

Issued by THE CUSTOMS SERVICE OF TURKEY IN PRESENCE OF A NOTARY PUBLIC

1. Country of Origin: KOREA

2. Country of Export: KOREA

3. Country of Import: KOREA

4. Description of Goods: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CERTIFICATE OF ORIGIN

5. Gross weight or other quantity and Value (P.U. unit when RVC criterion is used)

6. Number and date of invoices

7. Declaration by the exporter
The undersigned hereby declares that the above details and statement are correct; that all goods were produced in (Country) and that they comply with the origin requirements specified for these goods in the KOREA-ASEAN Free Trade Area Preferential Tariff for the goods designated to (Importing Country)

8. Certification
It is hereby certified, on the basis of control carried out, that the declaration by the exporter is correct

Place and date, signature and stamp of certifying authority

13. ☐ Third Country Invoicing ☐ Exhibition ☐ Back-to-Back CO

FTA 특혜 원산지증명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FTA 협정과 「FTA관세법」에 근거하여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원산지증빙서류

비특혜 원산지증명서

관세양허 외의 목적으로 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로, 원산지 표시 및 반덤핑관세 · 상계관세 적용 등을 주목적으로 발급되는 원산지 서류

/// 수출물품의 비특혜 원산지 관련 규정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법 제34조에 따른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 생산물품”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2.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한다)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3.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아니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완전생산물품, 실질적 변형, 단순한 가공활동의 기준 등 원산지 판정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③ 법 제34조에 따른 수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을 준용하여 판정하되, 그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기준이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과 다른 경우에는 수입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다.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기준) ① (생략)

-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에서 “실질적 변형”이란 해당국에서의 제조·가공과정을 통하여 원재료의 세번과 상이한 세번(HS 6단위 기준)의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세율표상에 해당 물품과 그 원재료의 세번이 구분되어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제조·가공 과정을 통하여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을 가하더라도 세번(HS 6단위 기준)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물품 생산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주요 공정 등 종합적인 특성을 감안하여 실질적 변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④~⑧ (생략)

Ⅲ. 미국 CBP의 검증동향



한-미 FTA 관련 미국 원산지검증 동향



- **[검증방식]** 한-미 FTA는 기본적으로 수입국이 검증을 수행하는 ‘직접검증’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 섬유 또는 의류상품 제외) 이에, 섬유·의류상품을 제외한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해서는 미국 CBP가 직접 원산지검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현황]** 한-미 FTA를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에 대한 미국 CBP의 원산지검증 건수는 최근 5년간 이전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17.1월 ~ ’21.1월) 당시 한국 수출물품에 대한 **미국의 FTA 원산지검증이 증가**하였던 전례가 있으므로, 대미수출 시 원산지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향후 미국 CBP의 검증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품목]** 섬유류(의류 등) > 전기기기(절연전선·케이블 등) > 자동차부품

- ✓ **트럼프 1기 행정부** 시기, 미국의 주요 검증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기계류 (각종 공작기기 부분품, 기어박스·베어링 등 / 84류)
- ② 섬유류 (편물제, 합성직물제 등 / 50 ~ 63류)
- ③ 전기기기 (전기회로 등의 부분품, 전동기와 발전기 등 / 85류)
- ④ 자동차 등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 등 / 87류)
- ⑤ 철강제품 (단조물 등 기타 철강제품, 관 연결구류 등 / 73류)

- **[미국 수출 시 유의사항]**

- ✓ **트럼프 2기 출범**으로 한-미 FTA를 활용하여 수출된 물품에 대한 미국 CBP의 원산지조사 강화조치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대미수출기업은 원산지 관리에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